

소방전문자격사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소방시설관리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formation of Certified Fire Fighting Specialists - Focused on Fire Protection System Managers -

오 형 근*
Oh, Hyeong Geun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d the operational status of fire protection system managers who execute self inspection of the fire equipment in the specific fire protection facilities and presented the improvement scheme. Being made up inquiry for job environment,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operational environment for the subject of fire protection system managers who execute self inspection to complement the fire equipment inspection by city public fire protection service, the issues of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institution of fire protection system managers were positively understood. The research result showed the conflict among building owner, fire equipment inspector, and fire protection system manager was existed due to the legal and institutional inertia to the self inspection, so it is judged that mutual complementary and cooperative relation should be established.

key words : certified specialists, fire protection system manager, self inspection

요 지

이 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수행하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운용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시 공설소방서비스로 소방검사를 보완하는 자체점검을 수행하는 소방시설관리사를 대상으로 직무환경, 제도환경, 운용환경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소방시설관리사제도의 운용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파악하였다. 연구에 나타난 결과는 자체점검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미비로 건물주와 소방검사원 그리고 소방시설관리사 상호간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상호 보완·협력적 관계를 정립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전문자격사, 소방시설관리사, 자체점검

1. 서 론

도시화¹⁾된 오늘날의 사회에서 화재는 안전사고나

재해에 비해 화재가 발생하면 급속히 확대되어 이를 적절한 통제를 하지 못 할 경우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는 물론 하나의 도시나 산업단지를 폐허로 만드는 특징이 있어 단일 건물이나 단일공장의 문제보다도

* 정회원 · 안양대학교 도시정보공학과 박사과정 (e-mail: hykuen@hanmir.com)

1) 도시지역에 인구가 집중하는 현상과 도시적 생활양식으로의 변화과정으로(Friedman, J., "Urbanization, Planning, and National Development" California: Beverly Hills, 1973, pp. 6~67) 한국의 도시인구는 40,384천명(87.5%)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인구및주택조사보고서).

도시사회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어 소방안전을 건물주의 자율로 맡기는 것보다 도시소방예방행정 체제(system)를 통해 다양한 제도와 규제를 활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도시공공서비스 공급의 주체는 전적으로 도시정부라는 점에서 더욱 많은 영역을 차지해나가는 경향(박경원,1989)에서 도시민에 대한 소방서비스는 1958년 소방법 제정이후 1991년 법률4419호로의 개정당시 까지 제도적으로 도시공설소방력이 전적으로 담당해 왔었다.

화재에 대응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성능유지를 위해 도시 공설소방력에 의한 소방검사(fire inspection)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 이러한 규제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 화재예방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화재는 도시사회의 안녕에 대한 불안요소가 될 뿐 아니라 안정적인 도시발전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결국 예방소방 측면에서 방안을 찾고 있다(Bennett, Jack A, 1995). 이는 소방인력과 장비 등 공설 소방력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정부의 재정 운용에 있어 커다란 압박요인으로 나타나는 현실 여건상 무한정의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한²⁾ 실정에서 소방검사와는 별도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스스로 점검을 실시하여 상시 정상기능을 유지 하도록 민간화³⁾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성을 갖는 소방시설의 점검에 있어 건물주가 점검기술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이를 대행하고 공설소방력을 보완하는 민간신분의 전문자격사⁴⁾로 소방시설관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소방시설관리사는 주된 기술자로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하여 자체점검을 수행하는 법적 책임자로 도시소방예방행정체제에서 준 소방력으로 활용하는 주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이후 전문가 집단(professional group)으로써 소방시설관리사의 공공성에 비해 제도 운용에 대한 조사나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설 소방력을 보완하는 도시소방예방체제내의 준 소방력으로 소방

시설관리사의 운용실태를 설문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도시소방방재재(都市消防防災材)로서 소방시설관리사 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착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목적으로 진행하였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도시방재재로 소방시설관리사 제도의 운용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소방시설관리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하여 실제 현장에서의 운용실태를 파악하였다. 공설소방력에 의한 소방검사제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를 민간화한 자체점검제도는 소방시설관리사사가 전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 개념으로 소방검사원과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검사와 자체점검을 혼용하여 비교하는 것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아울러 도시공설소방서비스인 소방검사와 도시공설소방조직에 대비해서 자체점검과 소방시설관리사를 하나의 범주에 놓고 진행하였다.

3.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

3.1 제도도입의 배경

오늘날의 복잡한 도시 소방 환경에서 도시정부는 공설소방력·장비·재원만으로는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지역논리와 실적지상주의에 따라 재난 관리에 대한 관심역시 소홀한 편이라고 할 수 있고(국가재난관리 변화와 혁신, 2004)나아가 도시공설소방력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과연 도시소방안전 서비스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소방 환경의 변화에 대해 소방안전 서비스의 생성과정에 있어 도시공설소방력의 역할증대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도입된 소방시설관리사 제도는 첫째, 공설소방서비스의 수혜자가 위험관리비를 지출해야하는 원칙에서 출발하는데 도시사회의 소방비용을 공설소방조직의 세

2) 세금에서 차지하는 지방세 비중은 2005년 기준으로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20.5%로 (일본 40.3%, 미국 39.6%, 독일 49.3% 등) 자체지방세나 세외 수입으로는 인건비도 못 주는 지자체가 전국의 250개 광역시도 및 시군구 가운데 72.8%인 182개나 된다. (동아일보, http://www.donga.com/fbin/output?rellink=1&code=a_&n=200606220101. 2006. 06. 22현재, 재구성)

3) 공공부문이 크게 되어 현재 정부가 행하는 많은 기능들이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민간부문에 더 할당되거나 시장의 역할에 맡기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관점에서 민간부문이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공급·전달하는 형태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건물주가 자율적으로 점검용역을 위탁하고 이를 수행하는 자체점검제도와 혼용해서 사용하기로 한다.

4) 시험 등 엄격한 자격취득 요건을 갖추어야만 진입이 가능하고 독립적으로 개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가 개별법에 의하여 자격을 관리하는 자격사로 이들 전문자격사에는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변호사 등이 해당한다.

출, 보험비용, 화재피해, 민간부분의 지출 등으로 구분 (Gardner, Thomas E. and Young, 1980) 할 때 공적자원을 이용하는 개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 (benefit principle)으로 공설소방조직의 역할이 개인의 소방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보다는 원칙적으로 전반적인 도시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경방·구조·구급 등의 거시적인 면으로 운용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비용은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이다. 둘째, 도시사회의 소방안전을 위해 공설소방조직에 부여된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반적이고 유효적절한 통제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서비스를 감당하지 못함으로써 생겨난 공동(gap)상태를 공적자원보다는 사적자원으로 대체한다는 것(이운근, 1999)으로 이는 사회의 다원화와 분화과정에서 초래되는 다양한 수요를 공설소방조직에서 따라가지 못한 결과 생겨나는 공동을 메우기 위해 민간화하고 있다. 셋째,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설소방조직의 적응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이를 민간부문을 단지 도시공설소방력의 보조수준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이를 주체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도시소방활동에의 접근에 있어 서비스주체의 다원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2 자체점검의 특징

도시의 예방소방행정 체제에서 소방검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정행위로 출입검사를 위주로 하여 화재의 발생과 확대 또는 그에 수반하는 위험을 예방하기위해 법령에 위반하는 사항 또는 화재 예방상 위험요인을 시정하도록 하며 또한 그 실태를 파악하는 활동으로 소방예방행정 감독권의 행사라는 측면에서 자체점검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자체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관계인이 스스로 점검하여 그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로 그 규모와 용도 및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자체점검자의 자격과 절차 및 방법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⁵⁾ 즉, 공권력작용 측면에서 소방검사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임무성격이 광의(廣義)의 공공이익을 위해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체점검은 일정 규모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만을 행하는 협의(狹義)의 공공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다르다.

3.3 소방시설관리사의 제도적 지위

소방시설관리사는 다른 전문자격사와 같이 기능면에서는 해당자격이 없으면 당해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업무 독점 형이고 특정직종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정도를 보여주는 전문분야의 자격자(신명훈, 1998)로 소방시설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자격 또는 경력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방시설관리사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을 주 업무로 하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과 폭넓은 전문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소방시설관리사는 8회에 걸쳐 433명⁶⁾이 배출되었고 2006.1.1현재 389명(전체 소방시설관리사의 82.9%)이 소방시설관리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예방소방행정통계, 2006).

3.4 선행연구의 검토

소방시설관리사제도의 도입이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전반적인 선행연구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검토하면, 자체점검 제도를 기존 소방검사 제도를 유지하면서 보완·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과 건축주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자율적인 예방체제로의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소방검사를 완화하는 목적과 자율점검을 강화하는 방법에서 다소간 차이가 있을 뿐이다. 김태윤(1999)은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들은 매우 제한되어 있고 예방상태의 수준을 제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시장의 잠재적 힘이 발휘 될 수 있는 여지가 봉쇄되어 있다고 보고 건물주가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임을 깨닫도록 법적관계가 정립되면 건물주는 자신에게 알맞은 소방예방서비스제도를 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제태환(2005)은 건물의 소방분야에 대해 도시 소방공설 조직에서 사사건건 간섭하는 행태로 운영하고 있어 관계인은 화재예방에 대해서는 관할조직의 책임이 아니냐는 방관자로 전락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였고, 이재홍(2003)은 매년 증가하는 소방검사대상물의 수요폭증과 부족한 전문 인력

5) 종합정밀점검인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을 제외한다)로 하되,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에 한 한다.

6) 1회(85명), 2회(22명), 3회(29명), 4회(9명), 5회(26명), 6회(18명), 7회(144명), 8회(100명) 등 2006.7.30 현재 433명의 합격자가 배출되었다(소방방재청 내부자료).

(예방검사 요원)을 비교하여 자체점검 대상을 확대해야하고 또한 대형 화재사고에 따른 소방검사 자의 문책성 책임추궁내지는 법적다툼⁷⁾에 따른 사기저하 등의 이유로 소방검사업무를 기피하는 실정에서 소방검사업무에 대해 민간소방으로의 이양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도시재정에 있어 운용상 압박과 이에 따른 자원의 효율적 배분 면에서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도시소방서비스를 무한정 제공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태로 이에 대해 정봉진(2003)은 도시재정문제에 따라 소방검사의 수혜자부담원칙에 있어 소방재원이 한정될 경우 소방기관의 소방서비스를 전면중단하던지, 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던지 간의 선택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고 정병도(2004)는 기술발전과 다양한 도시민사회의 환경에서는 도시정부 주도의 규제는 적응력과 효과성이 격감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과다한 행정수요를 유발하는 소방검사는 부조리의 단초를 제공하며, 사전적 원칙위주의 규제접근 방식으로 인해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력의 발현을 저해하고 있어 선진소방기술과 정책의 흡수에 장애가 되고 있고, 민간의 이해관계와 유인에 대한 정책적 반응성이 부족하여 결국 민간부문의 무책임과 도덕적 해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사회발전과 국민의식수준의 향상에 따른 서비스제공의 한계로 박경원(1989)은 민간화는 큰 정부에 대한 인식과 재정압박으로 요구되며 정부의 기능에 따라 정부공급의 축소(공급결정과 민간화), 재정부담의 민간화 및 규제의 완화를 통해 서비스공급비용의 감소, 공무원 수의 감소, 소비자선택권의 증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소방검사를 자체점검으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주장하는 김두현(2000)은 소방관련업 또는 건축주등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을 최대한 확보해서 자신의 결정결과에 대해 자신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엄정성·명확성·예방성이 유지되도록 개혁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상환(2002)은 일정한 기간에 대상시설을 파악하고 점검을 실시하여 해당설비의 양부를 판단함은 물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기술능력의 보유를 필요로 하므로 점검자의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자체점검도 단순히 점검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화기사용설

비나 방화피난설비 등의 기능유지를 도모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화연의 확대를 방지내지 소화하는 활동까지도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결과로는 현실적으로 여러 제약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관리사 제도는 다소간의 조정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논지는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나는데 오형근(2000)은 자체점검제도의 발전가능성에 대해 방화관리자와 소방검사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의 안전에 대한 욕구증가와 자체점검시장의 확대추세에 따라 발전을 낙관하고 있으나 장애요인으로서는 법적 뒷받침 부족, 비생산적인 업무, 성실한 점검의 미비와 함께 소방검사원들의 검사업무 이양반대 정서를 들고 있다. 또한 안상철(2002)은 소방시설점검 및 결과조치와 관련하여 특수장소⁸⁾ 관계자의 부당한 요구나 점검자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자체점검제도 정착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 결국 도시사회의 전반적인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소방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본제도 발전의 걸림돌로 나타났으며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소방시설 관리유지업계의 노력 또한 제도발전을 위한 주요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 예방소방행정체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검사에 대한 자체점검의 특성과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었다는 면에서는 선행연구와 범위가 유사하지만 실제 자체점검을 수행하는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해 직접 질문을 통해 소방시설관리사 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4. 소방시설관리사 실태조사 · 분석

4.1 조사개요

도시방재체로서 소방시설관리사제도의 운용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소방시설관리사의 운용에 대한 자료와 문헌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연구논지의 질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해 Likert의 5점 척도방식으로 설문하였다. 설문내용은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직무환경, 제도환경, 운용환경 등의 실태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표본은 2005.11.20부터 12월30까지 약

7) 청주 우암상가붕괴사고, 군산 윤락가화재, 서울 대림장 여관화재, 천안 꿈의공전 여관화재 등 대형인명피해 발생시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과실에 대한 민사소송사태가 있었다.

8) 현행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구 소방법(제2조)에서는 “특수 장소”라 하였다.

40일 동안, 1회부터 7회까지 배출된 소방시설관리사 중 전국적으로 소제가 확인된 200명의 소방시설관리사에게 우편을 통해 배부와 회수(104부, 회수율 52.0%)를 하였고 무응답과 기재내용이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98부(배부 수량 대비 49.0%)에 대해 분석하였다.

4.2 소방시설관리사 제도의 운용실태 분석

소방시설관리사 제도가 일선에서는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본 제도를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설문결과 표 1과 같이 나타났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소방시설관리사의 설문응답 결과표

변수	변 인	f	5점 척도(m, %)				
			①	②	③	④	⑤
복지 환경	1. 후생복지 정도	98	4(4.1)	50(51.0)	40(40.8)	4(4.1)	0(0.0)
	2. 계속 근무 여부	98	4(4.1)	20(20.4)	10(10.2)	64(65.3)	0(0.0)
직무 환경	1. 직무교육의 필요성	94	0(0.0)	0(0.0)	16(17.0)	62(66.0)	16(17.0)
	2. 전공과의 관련 여부	94	0(0.0)	16(17.0)	36(38.3)	42(44.7)	0(0.0)
	3. 타 업무로의 보직전환 가능성	94	0(0.0)	4(4.3)	18(19.1)	56(59.6)	16(17.0)
	4. 제도업무에 대한 부담	94	0(0.0)	4(4.3)	8(8.5)	70(74.5)	12(12.8)
전문 지식 환경	1. 관련 공무원대비 점검기술수준	98	0(0.0)	0(0.0)	16(16.3)	46(46.9)	36(36.7)
	2. 점검지식수준	98	0(0.0)	0(0.0)	40(40.8)	50(51.0)	8(8.2)
	3. 점검의 질적 완성 정도	94	0(0.0)	52(55.3)	16(17.0)	26(27.7)	0(0.0)
제도 환경	1. 자체점검 법규·규정의 정비 정도	98	12(12.2)	38(38.8)	40(40.8)	8(8.2)	0(0.0)
	2. 소방시설관리사 수(數)의 적정여부	94	8(8.5)	34(36.2)	32(34.0)	20(21.3)	0(0.0)
	3. 자격고사 과목의 변화 여부	90	0(0.0)	6(6.7)	20(22.2)	36(40.0)	28(31.1)
운용 환경	1. 점검물량의 적정여부	94	8(8.5)	18(19.1)	24(25.2)	32(34.0)	12(12.8)
	2. 점검시간의 적정여부	98	10(10.2)	60(61.2)	24(24.5)	4(4.1)	0(0.0)
	3. 점검 소홀의 발생여부	98	4(4.1)	14(14.3)	20(20.4)	52(53.1)	8(8.2)
	4. 점검결과의 허위보고 여부	98	4(4.1)	16(16.3)	24(24.5)	38(38.8)	16(16.3)
	5. 도시방재체제내 제도의 중요성 여부	94	0(0.0)	0(0.0)	12(12.8)	42(44.7)	40(42.6)
	6. 공설소방조직과의 갈등	94	0(0.0)	20(21.3)	26(27.7)	28(29.8)	20(21.3)
	7. 공설소방조직과의 업무협조관계	98	8(8.2)	4(4.1)	58(59.2)	28(28.6)	0(0.0)
	8. 관계인과의 마찰 여부	98	2(2.0)	32(32.7)	40(40.8)	24(24.5)	0(0.0)
	9. 점검에 대한 관계인의 신뢰 정도	98	0(0.0)	8(8.2)	28(28.6)	62(63.3)	0(0.0)
공익 환경	1. 점검의 화재예방에 대한 기여여부	98	0(0.0)	4(4.1)	24(24.5)	70(71.4)	0(0.0)
	2. 제도에 대한 도시사회의 인정여부	94	12(12.8)	38(40.4)	36(38.3)	8(8.5)	0(0.0)
	3. 도시사회 안전역할에 대한 자부심	94	0(0.0)	4(4.3)	8(8.5)	66(70.2)	16(17.0)
	4. 도시방재재로 제도의 위치 정도	94	0(0.0)	0(0.0)	24(25.5)	34(36.2)	36(38.3)
	5. 다른 민간전문자격사 대비 위상정도	94	20(21.3)	46(48.9)	20(21.3)	8(8.5)	0(0.0)
	6. 향후 제도의 위상변화 가능성	94	0(0.0)	4(4.3)	24(25.5)	62(66.0)	4(4.3)
제도 발전 환경	1. 상호 협력·협조 정도	94	0(0.0)	20(21.3)	46(48.9)	12(12.8)	0(0.0)
	2. 제도의 홍보여부	98	8(8.2)	30(30.6)	36(36.7)	24(24.5)	0(0.0)
	3. 제도에 대한 관계인의 이해정도	98	20(20.4)	50(51.0)	28(28.6)	0(0.0)	0(0.0)
	4. 향후 공설 소방업무의 이관 가능성	98	0(0.0)	4(4.1)	8(8.2)	54(55.1)	32(32.7)
	5. 이관 업무의 소화 가능 정도	98	0(0.0)	0(0.0)	16(16.3)	62(63.3)	20(20.4)

※ 5점 척도 : ①전혀 아니다 ②아니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 n=98

첫째, 제도를 운용하는 법규와 제도의 정비가 미흡하다. 자체점검은 건축물의 소방시설을 소방설계에 따라 소방공사를 시행하고 그 과정을 감리하여 허가 관청으로 부티의 사용이 승인된 건축물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나 일련의 이러한 과정이 적절하게 지켜지지 않은 경우 건축물의 사용기간 동안에는 소방시설 관리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둘째, 소방시설관리사의 배출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소방시설관리사는 자체점검의 전문성 제고와 공신력 확보가 절대적인 제도로 소방의 공공계적 성격과 공학과 과학의 이론이 실제 적용되는 분야임을 감안한다면 폭넓은 지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도시공설소방조직과의 갈등이 있었다. 그동안 소방검사라는 도시소방서비스를 전적으로 제공하던 도시공설소방조직은 소방시설관리사가 자체점검 제도를 통해 도시소방예방체제로 참여하는 것을 소위 밥그릇을 남에게 주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책임과 권한 관계에서 여전히 손아래 파트너 정도로만 인식한다면 상호간 수평·수직적으로 일정한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보다는 경쟁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넷째, 직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도시사회의 소방여건이 대규모·다양화·전문화되어 사회적 이동성이 커져감에 따라 그에 합당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훈련을 요구하고 있다.⁹⁾

다섯째, 소방시설관리사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였다. 지금까지 도시의 소방안전에 대해 도시공설소방력에 강하게 의존했던 경험은 소방시설관

리사제도의 정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자체점검제도가 도시소방안전에 있어 소방검사제도 못지않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홍보가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섯째, 점검 소홀과 점검결과의 허위보고가 있다. 자체점검 업무에 있어 소방시설관리사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이나 점검결과에 대한 허위보고는 도시민과 공설소방조직에서의 신뢰성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제도정착의 장애로 나타나고 있다.

일곱째, 제도정착을 위한 소방시설관리사 자체의 노력이 부족하며 상호간 협력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4.3 소방시설관리사 제도의 발전방안

표 2는 소방시설관리사 제도의 발전과 장애요인에 대해 설문한 복수응답을 격차¹⁰⁾로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응답결과로는 점검대상의 확대와 건축물의 대형화 등 자체점검대상의 증가하고 있고 제도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관계인의 안전의식 변화 역시 일정 부분 발전요인(+)으로 나타났으나 근래 소방시설관리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소방공설조직의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인식부족이 제도발전의 장애요인(-)으로 들고 있었다.

이상의 운용실태 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면에서는 소방시설관리사 제도의 한계와 공설소방조직과 업무범위에 대한 관계설정에서 상호간의 이해부족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운용에 있어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표 2. 소방시설관리사제도의 발전과 장애요인

변 인	발전요인(n:204)		장애요인(n:152)		격차
	f	%	f	%	
1. 관계인의 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	60	29.4	44	28.9	+1.5
2. 용역대가의 수준	52	25.5	16	10.5	+15.0
3. 제도·규정의 체계	32	15.7	40	26.3	-10.6
4. 소방공무원의 인식수준	28	13.7	32	21.1	-7.4
5. 소방대상물의 신축	28	13.7	0	0.0	+13.7
6. 소방시설관리사의 배출정도	0	0.0	20	13.2	-13.2

9)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1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내용과 수준면에서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10) 격차는 0을 기준으로 하여 발전요인과 장애요인의 비율 차를 계산하여 그 차이의 방향별로 소방시설관리사 제도의 발전요인과 장애요인으로 변별하였다. 즉, “+” 일 때 발전요인으로, “-” 일 때를 장애요인으로 구분하였다.

5. 결 론

오늘날 도시정부의 기능만으로는 소방예방활동을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되는 자체점검제도를 도입하여 소방시설관리사가 도시공설소방조직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보완하고 개인이나 집단의 소방안전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시 소방예방 체제 내에서 일정 부분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도시민의 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과 공설소방조직의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이해부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 나타난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제도를 운용하는 법규와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운용체계에 있어 미흡한 법규와 제도는 이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금지하고 대립하는 소극적 규제의 대상으로 되기보다는 법적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하며 안내하는 등의 긍정적 규제가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2. 소방시설관리사의 배출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공학과 과학 등 많은 분야가 연결된 소방시설의 점검에는 전문적 기술을 필요로 하므로 소방시설관리사로의 배출당시부터 소방시설 뿐만 아니라 건물전체의 방재안전을 조언할 수 있는 역량을 기본으로 하여 그 직무가 철저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응시자격과 고사(考査)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공설소방조직과 갈등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적이고 보완하는 형태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업무성격상 그 역할과 기능면에서 소방검사는 건축물의 완공이후 일상적인 규제과정을 통해 사전 화재예방을 강조하는 법 집행위주인 반면 자체점검은 건축물 완공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화재를 소방시설에 의해 예방하고 초기진압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는 기능과 역할을 행하므로 각종 강제권 등의 권한이 주어져 있는 공설소방조직에 비해 자체점검은 점검결과에 따라 공설소방조직에서 발동하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자료로 사용되므로 소방예방행정을 집행하는 공설소방조직의 보완조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현행 법규상 지배와 복종관계 및 대등관계로 규정지

을 수 있다.

4. 직무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소방시설관리사로서 요구되는 직업적·윤리적 지향성이 자격취득 이전에 이미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에서 전문기술을 심화하고 보다 폭 넓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이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5. 소방시설관리사 스스로가 제도정착과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향후 도시공공서비스의 전반적인 민간화로 확대 추세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의 업무영역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형근(2005)은 새로운 시대에서는 높은 기술과 숙련된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장석화(2003)는 시대변화에 따라 정부가 하던 일이 민간부문에 크게 아웃소싱 되어 정부기능의 민간이양이 대폭 이루어지고 새로운 정부의 재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 제도의 장래는 소방시설관리사의 노력여하에 따라 도시민에 대한 소방서비스의 기회는 더욱 많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독자적인 역량에 지나치게 의존 하였던 편협심이나 세속적인 타성의 굴레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전문가 집단(professional group)이면서 정책형성과 집행과정에서 협력자(political interest group)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의 한계로는 전체 시설관리사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하나 최근 급격히 증가 한 소방시설 관리사에 대한 설문지 전달의 한계가 있었고 또한 낮은 회수율은 소방시설관리사의 운용실태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제도를 발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아울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김태운 (1999). 규제개혁과 21세기의 소방, 소방행정, 창간호, p. 17.
- 박경원 (1989). 도시공공서비스 공급의 민간화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박동균 (2005). 위기관리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인식분석을 통한 정책대안 모색, 한국공안행정학회 논

문집, 한국공안행정학회, 19호, p. 71.

신명훈 (1998). 자격제도의 종합적 실태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안상철 (2002). 소방시설자체점검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고찰, 소방안전, 통권124호, p. 24.

이상환 (2002). 한국소방점검제도의 효율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이윤근 (1999). 사회안전확보를 위한 전문자격증 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행정논집, 동국대학교, 제27집. p. 316.

이재홍 (2003). 소방검사업무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오형근 (2000).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_____, (2005). Ubiquitous시대 소방대상물의 관리 환경 변화예측에 관한 연구, 소방논문집, 경북소방학교, 제9호. p. 50.

장석화 (2003). 일선재난관리행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제태환 (2005). 방화관리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정봉진 (2003). 소방검사의 법적책임과 그 검사체계의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정병도 (2004). 소방규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최종태 (1999). 소방형법개론, 주식회사 동화기술.

국가재난관리 변화와 혁신 (2004). 소방방재청, p. 6.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 (2006). 소방방재청, p. 219.

Bennett, Jack A. (1995). *Planning Community Fire Defence*, in Bachtler, Joseph R. and Brennan, Thomas F.(Ed.), *The Fire Chief's Handbook*, Fifth Edition, Fire Engineering Books and Video, Saddle Brook, pp. 957-958.

Dittmar, Mary Jane, (1992). *Ownership of the Fire Service : the Privatization Issue* Fire Engineering(September), pp. 81-94.

Friedman, J. (1973). *Urbanization, Planning, and National Development* California : Beverly Hills, pp. 66-67.

Gardner, Thomas E. and Young, Thomas R. (1980). *Fire Protection in Productivity Improvement Handbook for State & Local Government*, Published in Cooperation with the National Academy of Public Administration, A Wiley-Interscience Publication New York, p. 1044.

© 논문접수일 : 2006년 07월 13일
 © 심사의뢰일 : 2006년 08월 03일
 © 심사완료일 : 2006년 11월 30일